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이종환 의원 외 25명

나. 의안번호: 제2941호

다. 발의일자: 2025. 8. 11.

라. 회부일자: 2025. 8. 14.

2. 제 안 사 유

- 최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수상스키, 카약, 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 세부 입법 규정은 불비(不備)한 상태임.
- 안전협의회 설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 업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임.
- 또한, 서울시가 1,000만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겠다는 “2030 리버시티, 서울” 계획에 따라 한강에서의 수상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안전협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다. 안전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등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 요청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 제35조¹⁾에 따라 시장이 관계 행정 기관과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안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세부 협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수상스키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바, 안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 중 안전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안전협의 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